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및 등록 취소〉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35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상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및 등록 취소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17.
3. 회부연월일 : 2025. 10.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장등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그런데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 중 일부가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장기간 영업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가맹 등록된 노점 수가 실제 영업 노점보다 많아 가맹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상시 영업하는 상인과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점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에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의

영업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등).

Ⅲ. 검토의견

1. 상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및 등록 취소

개정안은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및 등록 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있음(안 제26조의4 및 제26조의6).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u>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u> <u><신 설></u>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u>1.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u>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⑤ ~ ⑪ (생 략)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신 설>

3. 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1호-----

-----.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의4제2항제1호에-----

2의2. 제26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¹⁾

한편, 전통시장 내 점포를 사업장 주소로 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노점 중 일부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전통시장 구역 밖에서 하면서 상품권을 취급하는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²⁾가 있는바, 이러한 행태가 전통시장 등 영세상권의 매출 증대라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상품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않는 상인 및 상인조직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의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204호, 시행 2026. 6. 17.)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①·② (생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④ ~ ⑪ (생략)

2) 매일신문, “팔달신시장 온누리상품권 가맹 노점, 실제보다 3배 넘게 등록…관리 부실 논란”, 2025.9.15.자(URL: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91517002938159>)

매일신문, “‘창고 가맹점’ 불송치 웬말?...팔달신시장 상인들 이의신청 본격화”, 2025.10.25.자 (URL: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102315595834015>)

매일신문, “[취재현장-정두나] 품수 유통 막는 온누리상품권 디자인”, 2025.10.26.자 (URL: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102614163943168>)

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유통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2026년 6월 시행예정인 개정법률에서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³⁾ 가맹점의 실제 영업 여부나 영업장소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가맹점이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등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개선된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법령에 따르더라도 전통시장 등 구역 내 상인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전통시장 등 구역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204호, 시행 2026. 6. 17.)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① ~ ⑤ (생략)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의 경우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개별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⑧ ~ ⑪ (생략)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204호, 시행 2026. 6. 17.)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략)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맹점의 소속 시장등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장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4. 제26조의4제9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⑤·⑥ (생략)

외 영업에 대한 취소 근거 신설은 시행예정인 개정법률과 조문이 중복되므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또한, 5일장 등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경우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상시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